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상에서의 수색 ·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희용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079호)

2024.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재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수상구조사의 업무역량 확대 및 자격 등급의 세분화	3
2. 수상구조 보수교육 기간의 합리적 산정 등	7
3. 부칙(민간자격 소지자에게 특례 부여 등)	1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희용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8. 22.

3. 회 부 일 : 2024. 8.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 수상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경우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상레저를 즐기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수상 안전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어 수상구조사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수상구조사는 업무역량에 따른 등급 구분이 없어 다양한 수상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에 한계가 있으므로 수상구조사 등급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재 수상 안전 분야는 국가자격인 현행법에 따른 수상구조사와 민간자격인 인명구조요원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자격기본법」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는 민간자격 신설 분야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수상 안전 분야 자격을 국

가자격으로 통합·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그 자격 유지를 위하여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또는 직전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 또는 직전 교육을 받은 날이 개인별로 상이하여 그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도 개인별 편차가 크므로 보수교육의 통합적·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상구조사 자격등급을 지도사·1급·2급으로 구분하고, 수상구조사의 보수교육을 자격증 발급일 등 기산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1년 내 이수하도록 하는 등 수상구조사 자격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우수한 수상구조 인력을 양성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제1항·제3항 및 제30조의7제1항제1호·제2호).

Ⅲ. 검토의견

1. 수상구조사의 업무역량 확대 및 자격 등급의 세분화

현행법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수상구조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수상구조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적인 능력에 구조 활동뿐만 아니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교육 수행 능력을 추가하고, 수상구조사의 등급을 지도사·1급·2급으로 세분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제1항,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수상구조사)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30조의2(수상구조사) ① ----- ----- <u>구조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교육을 수행하기</u> ----- ----- -----.
② (생략) <u><신설></u>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의 등급은 지도사·1급·2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⑦ (생략)	④ ~ ⑧ (현행 제3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현행법령은 응급처치·구조기술·종합구조 등 총 64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해양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¹⁾

수상구조사는 실제 직무환경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활동, 수상 안전예방 활동 및 교육 등의 다양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²⁾

- 1) 제30조의2(수상구조사)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수상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③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구조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수상구조사 자격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 ⑤ 수상구조사 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30조의3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구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⑥ 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교육과정,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⑦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4(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6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0조의5(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등) ① 자격시험은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자격시험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법(泳法): 15점
2. 수영구조: 15점
3. 장비구조: 15점
- 3의2. 기본구조: 20점
4. 종합구조: 20점
5. 응급처치: 10점
6. 구조장비 사용법: 5점

③ 자격시험은 과목별 점수의 합을 총 100점으로 하여 그 중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으로 한다.

2) 【수상구조사의 임무 및 역할】 수상구조사 자격 취득 시 다음 분야에서 직무수행이 가능함.

- | | |
|----------------------------|------------------------|
| • 수영장 수상안전요원(체육시설법), | • 물놀이 유원시설 안전요원(관광진흥법) |
| • 물놀이형 안전요원(어린이놀이시설법), | • 안전 전문인력(청소년활동 진흥법) |
| • 낚시어선 안전요원(낚시관리법), | • 안전교육 전문인력(국민안전교육법) |
| •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해수욕장안전관리지침), | • 안전관리요원(연안사고예방법) |
| • 생존수영 강사(교육부 생존수영 지침) | |

현행법에서는 수상구조사가 갖추어야 할 업무역량을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 능력으로 한정하고 있고 업무역량에 따른 자격 등급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수상구조 전문인력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양성을 위하여 수상구조사의 자격 등급을 세분화하고, 수상구조사의 업무역량을 실제 업무에 맞게 확대함으로써 수상구조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수상구조사 자격을 보다 전문적·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몇 가지 측면에서 수정 또는 내용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첫째, 개정안은 등급별 자격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을 뿐 등급별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 등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등급별 업무수행 범위 등의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수상구조사의 자격과 유사하게 1급·2급 자격체계를 이루고 있는 응급구조사의 경우에는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과 업무범위가 구분되어 있음.³⁾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① 응급구조사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와 2급 응급구조사로 구분한다.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①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며,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는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응급구조사의 업무)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별표 14와 같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가.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기도기(airway)의 삽입, 기도삽관)	가. 구강내 이물질의 제거 나. 기도기(airway)를 이용한 기도유지

추가적으로 개정안에서 수상구조사의 업무역량을 확대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안전관리”는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설비의 설치·운영, 안전관리규정 작성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⁴⁾ “안전사고 예방 활동” 등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표현할 필요가 있음.

(intubation), 후두마스크 삽관 등을 포함한다) 나. 정맥로의 확보 다.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라. 약물투여 : 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의 주입,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 투여, 쇼크시 일정량의 수액투여,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마.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다. 기본 심폐소생술 라. 산소투여 마. 부목·척추고정기·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바.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사. 심박·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아. 쇼크방지용 하의 등을 이용한 혈압의 유지 자.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 차.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 투여 및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환자가 해당약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

- 4) 예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기간의 합리적 산정 등

현행법상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 또는 직전 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수상구조사의 보수 교육 기간을 수상구조사 개인의 직전 보수 교육 이수일과 관계없이 같은 기간으로 산정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7).

현행	개정안
제30조의7(자격유지) ①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보수교육 기간”이라 한다)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의7(자격유지) ① ----- ----- ----- ----- ----- -----.
1. 최초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u>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u>	1. ----- ----- ----- <u>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u>
2. 제1호 이외의 경우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u>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u>	2. ----- ----- <u>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u>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에서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그 자격 유지를 위하여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또는 직전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⁵⁾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 또는 직전 교육을 받은 날이 개인별로 상이하여 그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도 개인별 편차가 크므로 보수교육의 통합적·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래 표와 같이 같은 날 자격을 취득해도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시점에 따라 다음 보수교육 기간의 차이가 계속 발생하게 되는 불합리함이 있고,

보수교육 미 이수시 자격정지에 그치는 응급구조사와 달리 수상구조사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자격정지 기간이 경과하면 자격이 취소된다는 점⁶⁾과 3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는 민간자격인 인명구조요원에 비해 짧은 2년마다 이루어지는 보수교육으로 인하여 수상구조사 자격 취득자의 유지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자격의 전문성을 확보하면서도 자격제도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5) 제30조의7(자격유지) ①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보수교육 기간”이라 한다)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최초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2. 제1호 이외의 경우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6) 제30조의7(자격의 취소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자격이 정지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보수 교육기간 전·후 비교]

구 분	현 행		⇒	개정 후	
	A 수상구조사	B 수상구조사		A 수상구조사	B 수상구조사
자격 취득일	'24. 1. 1.			'24. 1. 1.	
보수교육 기간	'26. 1. 2.~7. 1.(6개월간)			'27. 1. 1.~12. 31.(1년간)	
보수교육 이수일	'26. 1. 2.	'26. 7. 1.		'27. 1. 1.	'27. 12. 31.
보수교육 기간	'28. 1. 3.~7. 2.	~~28~~ 7. 2~ ~~29~~ 1. 1		'30. 1. 1.~12. 31.	
효 과	▶ 직전 보수교육 이수일에 따라 보수교육 기간의 차이 발생			▶ 직전 보수교육 이수일에 상관없이 같은 기간으로 산정	

이에 개정안은 보수교육 기간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보수교육의 주기를 3년으로 연장하여 취득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격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3. 부칙(민간자격 소지자에 대한 특례 부여 등)

개정안 부칙에서는 민간단체가 발급한 인명구조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의 수상구조사 자격증 취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안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단체가 발급한 인명구조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의 수상구조사 자격증 취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인명구조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특례시험을 거쳐 이 법에 따른 등급별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제3조(수상구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3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상구조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수상구조사 자격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민간자격⁷⁾인 인명구조요원과 사실상 같은 자격으로 취급되어⁸⁾ 이원적으로 운영⁹⁾됨에

7) 현행 「자격기본법」 제2조는 “자격”을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국가자격”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으로 정의하며,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은 “민간자격”으로 정의하고 있음.

8) 예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이나 래프팅가이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인명구조요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별표 12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중 해양경찰청장이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
나. 단체가 운영하는 인명구조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9) 수상구조사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 취득현황

따라 인명구조 자격체계에 대한 국민 혼란 및 신뢰도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¹⁰⁾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는 국민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가자격으로 단일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¹¹⁾

[수상구조사 및 인명구조요원 비교]

구 분	수상구조사(국가자격)	인명구조요원(민간자격)
정의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이용객의 안전관리와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배치되는 사람
자격 신설 연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5.7.24.), 시행(2016.1.25.)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제정(2000.1.28.), 시행(2000.2.9.)
자격 취득 방법	① 교육기관에서 사전교육(64시간) 이수 후, ② 해양경찰청이 주관하는 시험에서 7과목 총 60점 이상 득점 * 지방해양경찰청장 명의 자격 발급	① 민간단체에서 사전교육(40시간) 이수 후, ② 자체 평가에 응시하여 5과목 총 70점 이상 득점 * 민간단체장(16개) 명의 자격 발급
교육과정	[총64시간] <이론> -수상구조사의 자세(2시간) -관계법령(4시간) -수난사고의 이해(6시간) -응급처치(4시간)	[총40시간] <이론> -수상일반상식(4시간) -인명구조요원의 자세(2시간) -기본인명구조술(2시간)
	<실기> -응급처치(9시간) -구조기술(28시간) -종합구조(11시간)	<실기> -출혈, 쇼크대응, 골절처치 등(2시간) -익수자 운반(부목사용 등) 2시간 -기본인명구조술(4시간) -인명구조법(24시간)
교육기관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등 47개	민간단체 16개
관리체계	- 2년마다 6개월 이내 보수교육 이수 - 6개월마다 결격사유 유무 조회	- 유효기간 3년 - 유효기간 만료 1년 이내 보수교육 이수

(단위: 명)

구 분	연도별	2020	2021	2022	2023	2024.6월
수상구조사	응시인원 수	554	940	1,061	1,152	675
	합격인원 수	395	598	679	698	401
인명구조요원	응시인원 수	4,157	5,433	6,426	7,450	5,105
	합격인원 수	3,627	4,701	5,649	6,687	4,297

10) 역할이 겹치는 두 개의 별도 자격이 이원화하여 운영되는 자격제도와 민간자격 효력 유지는 국가자격의 필요성 저하, 역할의 책임 범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상구조사 전문성 강화 및 저변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p78, 2023.12.)

11) 수상구조법 개정 정책포럼('24.9.6.) "수상구조사 전문성 강화 및 저변확대 방안(김성길 교수)"

이에 개정안 부칙 제2조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인명구조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특례시험을 거쳐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수상구조 인력의 자격을 일원화하려는 취지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 부칙 제3조에서는 종전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수상구조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종전의 자격자가 어느 등급의 자격증을 받는지 명확히 하였으나,

개정안 부칙 제2조는 기존 민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특례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어떤 등급의 자격을 부여 받는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등급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25

참고1

수상구조사, 인명구조요원, 응급구조사 비교

구분	수상구조사(국가자격)	인명구조요원(민간자격)	응급구조사(국가자격)
근거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정의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이용객의 안전관리와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배치되는 사람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자격 신설 연도	수상구조법 개정(2015.7.24.), 시행(2016.1.25.)	수상레저안전법 제정(1999.2.8.), 시행(2000.2.9.)	응급의료법 제정(1994.1.7.) 시행(1995.1.1.)
자격 취득 방법	① 교육기관에서 사전교육 64 시간 이수 후, ② 해양경찰청이 주관하는 시험에서 7과목 총 60점 이상 득점 * 지방해양경찰청장 자격 발급	① 교육기관에서 사전교육 40 시간 이수 후 자체 평가에 응시하여 5과목 총 70점 이상 득점 * 민간 교육기관장 자격 발급	① 교육기관에서 사전교육 343 시간 이수 후 ② 필기시험(5과목, 40% 이상) 및 실기시험(60%) 총 60% 이상 득점 * 보건복지부장관 자격 발급
각종 수수 료	사전교육비용: 약 55만원 응시수수료: 3만원 보수교육비용: 7만원	사전교육비용: 약 35만원 응시수수료: 약 1만원 보수교육비용: 약 7만원	사전교육비용: 약 200만원 응시수수료: 약 14만원 보수교육비용: 약 7만원
관리 체계	① 2년마다 6개월 이내 보수교육 이수 ② 6개월마다 결격사유 조회 * 보수교육 미이수시 자격정지(1년) 후 자격취소	① 유효기간 3년, 유효기간 만료 1년 이내 보수교육 이수 * 보수교육 미이수시 자격정지(1년) 후 자격취소	① 자격 취득일부터 3년마다 취업 상황 신고 ② 업무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휴직 기간에 따라 교육시간 차 등) *보수교육 미이수시 자격정지

참고2

수상구조 관련 자격제도 연혁

민간자격증 발급 (’67년~)	▶ 대한적십자사에서 인명구조자격증 최초 발급
자격기본법 제정 (’97년)	▶ 자격체계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 *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는 민간자격 신설 제한
수상레저법 제정 (’00년)	▶ 수상레저사업장 등록시 인명구조요원 배치 의무화 ※ 관련 민간 인명구조자격들이 인명구조요원 자격으로 일원화
국가자격증 추진 (’14년)	▶ 민간단체의 무분별한 자격 발급 등 폐단 발생에 따라 인명구조 자격의 엄격한 검증을 위해 국가자격 신설 추진
수상구조사 신설 (’15년)	▶ 수상구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15.7.개정, ’16.7.시행) * 국회 논의과정에서 기존 민간자격의 신뢰성을 이유로 민간자격을 흡수하는 특례규정 미포함
이원화 관리·운영 (~ 현재)	▶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이 동급의 자격으로 취급 * 안전요원 희망자들은 엄격한 평가에 의해 취득해야 하는 수상구조사 보다 쉽게 취득 가능한 인명구조 자격 선호